

공고 제 6 호

##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25년 02월 20일

해신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신 *아	신 *아 1990-03-26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(해망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2-17